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973
----------	-------

발의연월일 : 2026. 3. 31.

발 의 자 : 신장식 · 김선민 · 서왕진  
백선희 · 강경숙 · 이해민  
정춘생 · 차규근 · 한창민  
황운하 · 최혁진 · 정혜경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임기나 연임 횟수에 관하여는 「상법」상 이사 임기 규정 외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예외적 겸직 가능 사유 중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것은 직무 전념 및 이해상충 방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반복적인 연임으로 인한 권한 집중이 금융회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상근 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위임조항을 삭제

제하고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제한 및 총 임기 등을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및 제10조제2항 등).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중 “자격요건”을 “자격요건 등”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임기)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총 임기는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임되는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 및 총 임기는 이 법 시행 전에 선임된 대표이사의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제3조(겸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으로서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고 있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으로서의 임기 만료일과 그 상근 임원이 겸직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으로서의 임기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임기 만료일이 이 법 시행 후 3년 이후이거나 다른 회사의 직원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년이 되는 날로 한다)까지는 이 법에 따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